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87
----------	-------

발의연월일 : 2019. 11. 14.

발의자 : 손혜원 · 이양수 · 강석진
박완주 · 윤준호 · 오영훈
손금주 · 경대수 · 황주홍
박주현 · 김현권 · 김태흠
정운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법률 제 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저감한”을 “줄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저감된”을 “줄어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저감하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과하거나”를 “지나거나”로,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u>저감된</u>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같음)</p> <p>④ ----- -----<u>줄어</u> ----- -----.</p>
<p>⑤ (생 략)</p> <p>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u>저감하기</u>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 ----- -----<u>줄이기</u> ----- ----- ----- -----.</p>
<p>② · ③ (생 략)</p> <p>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생 략)</p> <p>② 유효기간등이 <u>경과하거나</u>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u>경과된</u>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지나거나</u> ----- -----<u>지난</u> ----- -----.</p>
<p>③ (생 략)</p> <p>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 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u>없는 한</u> 측정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 --- <u>없으면</u> ----- -----. ④ (현행과 같음)
--	--